[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1.0 목적

규칙 제2.3.1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입찰 업무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에 있다.

2.0 적용범위

중앙급전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전력거래소 회원과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발전회원"이라 한다.) 및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전력거래소 회원(이하"수요회원"이라 한다.)들의 입찰행위 및 전력거래소의 입찰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14.11.3., 2016.5.12>

3.0 책임

- 3.1 시장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본 별표에 따라 입찰행위가 공정하고 효율 적이며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입찰운영을 하여야 한다.
- 3.2 시장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장은 입찰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3.3 발전회원과 수요회원은 모든 입찰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별표에서 정한대로 올바른 입찰 행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 3.4 발전회원 및 수요회원은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거래소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4.0 참고자료

본 별표에 적용되는 지침, 기준, 편람 등은 다음과 같다.

- 4.1 별표 10 연료제약발전기운영절차
- 4.2 입찰시스템 운영메뉴얼

5.0 용어의 정의

본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1 계통운영담당자 전력계통의 원활한 운영 및 전기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일련의 업 무를 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 5.2 입찰운영담당자 전력거래의 입찰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5.3 입찰시스템운영담당자 전력거래를 위한 입찰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5.4 수요예측담당자 수요예측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루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예측을 담당 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1.1.>
- 5.5 <삭제 2021.1.1.>
- 5.6 계통한계가격결정담당자 계통한계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5.7 발전계획담당자 <개정 2021.1.1.> 전력계통의 각종 제약조건을 고려한 발전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5.8 <삭제 2012.12.31.>
- 5.8.1 <삭제 2012.12.31.>
- 5.9 비용평가위원회 변동비반영발전시장 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발전회원 소유인 발전기의 비용자료와 수요반응자원의 순편익가격 산정방식 등을주기적으로 사전에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11.3., 2019.12.31.>
- 5.10 중앙급전발전기 식별번호 중앙급전발전기의 구성과 식별번호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11 수요반응자원 식별번호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식별번호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12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식별번호 [신설 2016.5.12.]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구성과 식별번호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0 입찰절차

- 6.1 입찰의 종류 입찰의 종류에는 발전입찰, 양수계획입찰, 충전계획입찰, 변경입찰, 전력 부하감축(증대)입찰, 비상대기예비력입찰이 있다. <개정 2016.5.12., 2020.12.1., 2021.1.1., 2021.7.1.>
- 6.2 입찰시스템 사용설명서<개정 2006.12.26.>

- 6.2.1 전력거래소는 입찰에 필요한 사용자 설명서를 "입찰시스템"에 게시하여 야 한다.
- 6.3 입찰방법
- 6.3.1 발전입찰(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 제외) <개 정 2019.1.2., 2025.7.10.>
- 6.3.1.1 입찰은 거래전일 거래시간 19시부터 거래 다음날 거래시간 4시까지 총34 시간에 대하여 한다. 단, 양수발전기는 거래일 24시간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2.12.31.>
- 6.3.1.2 입찰시 시간대별 공급가능용량(MWh)은 송전단 기준으로 제출하되 발전 기정비관리시스템의 발전기 정비계획(승인)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전기의 출력증가/감소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거래기간 중의 공급가능용량은 해당시간의 1시간이전 공급가능용량에서 출력증가량(출력감소량)을 더한 (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미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2019.12.31., 2020.10.1.>
- 6.3.1.3 두 가지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는 발전계획수립기간의 발전기 운전형태를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용연료를 변경할 때에는 입찰서에 2차연료사용 또는 1차연료변경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히, 1차연료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실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서면통지하여야하며, 일일 입찰시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21.12.28., 2024.8.1.>
- 6.3.1.3의 1. 1차연료는 1차연료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시하다.
 - 1 원자력, 2 석탄, 3 LNG, 4 LPG, 5 유류, 6 기타
- 6.3.1.4 계획예방정비 및 간이정비 후 동 발전기를 시험할 목적으로 입찰시 제약 운전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험계획에 따른 공급가능용량을 제약발전량 과 동일하게 입찰하여야 하고 제약사유란에 성능시험, 시운전 등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6.3.1.5 발전기의 시험 및 제약운전 시 제약입찰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특기사항(발전운영 참고사항)에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 6.3.1.6 발전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운영담당자 및 입찰시스템운영담당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번호변경 2011.12.2.>
- 6.3.2 복합화력발전기
- 6.3.2.1 복합화력발전기는 기상청의 시간대별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공급가능용량

을 산정하여 입찰하되, 발전계획수립기간 내 일부 또는 전체 시간 동안 시간대별 예보온도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에 예보된 최 고,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찰한다. (거래시간기준)

> 최저온도적용: 01시~08시 평균온도적용: 09시~11시 최고온도적용: 12시~18시 평균온도적용: 19시~24시 (평균온도는 최저/최고온도의 중간)

<개정 2006.9.14., 2013.4.30., 2021.1.1.>

- 6.3.2.2 복합화력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은 해당 발전기가 속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기상청이 입찰마감시간에 가장 근접하여 발표한 거래일의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기상청이 입찰 당일 해당 발전기가 속한 지역에 대하여 예보온도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대한 예보온도를 적용한다.[신설 2006.9.14.]
- 6.3.2.2의 1.복합화력발전기가 6.3.7.5.3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예보온도 갱신으로 변경입찰을 하는 경우, 변경된 공급가능용량은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된 공급가능용량을 기준으로 온도변화로 인한 공급가능용량 변경만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예보온도의 변경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0.1.]
- 6.3.2.3 <삭제 2022.11.30.>
- 6.3.2.4 복합화력발전기는 거래일 입찰시간에 대해 GT 모드 및 CC 모드를 모두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래일에 ST 부분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시간에 대해서 CC 모드는 GT모드와 동일하게 입찰한다.[신설 2019.12.31.] <개정 2020.10.1.>
- 6.3.3 양수계획입찰
- 6.3.3.1 전력시장에서 전력의 거래를 원하는 회원 중 양수발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회원은 거래일 24시간에 대하여 양수발전기의 양수계획서(모사전송 입찰시는 별지 제32호서식)를 마감시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6.3.3.2 양수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이 양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일 전일 17시 30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17시 30분 이후에는 설비의 중대고장이 발생하거나 시운전 양수발전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수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5.10.10., 2023.9.26.>
- 6.3.3.3 양수발전기의 양수계획시 제약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요 범위 내에서 제약운전 예상수요와 제약사유를 기재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3.3.4 양수발전기의 양수계획서 제출시 양수계획시간대의 당해 발전기의 공급가 능용량은 "0"으로 한다.
- 6.3.3.5 양수발전기의 발전입찰량과 양수입찰량은 상호 연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허용편차율을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발전기별 허용편차율은 연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양수발전기별 허용편차율 산식: |(발전입찰량-펌핑입찰량×ni)÷발전입찰량|
- 6.3.4 시운전전력 입찰
- 6.3.4.1 시운전발전기는 입찰서 제출시 공급가능용량과 제약운전으로 인한 공급가 능용량을 기재하고 제약사유에 시운전이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발전기가 규칙 제18.3조 제8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발전기는 시운전제약을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03.9.18]<개정 2006.9.14., 2007.7.23>
- 6.3.4.2 시운전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자료는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사·결정 전까지 설계자료를 적용하며, 발전회원은 최초 시운전전력 입찰 7일전까지 서면 으로 기술적 특성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7.1.>
- 6.3.4.3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은 월간 시운전발전계획을 별지 제34호서식 에 의하여 거래월의 전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다.
- 6.3.4.4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은 주간 시운전발전계획을 별지 제35호서식 에 의하여 거래주의 전주 목요일 16시까지 서면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3.4.5 시운전 전기저장장치의 입찰에 대한 사항은 시운전발전기의 시운전전력 입찰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5.12.]
- 6.3.5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삭제 2005.10.10.>
- 6.3.6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및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 입찰 [신설 2019.1.2.] <개정 2025.7.10.>
- 6.3.6.1 입찰은 거래일 24시간에 대하여 한다.
- 6.3.6.2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운영담당자 및 입찰시스템 운영담당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6.3.7 변경 입찰 <조문번호 변경 2019.1.2.>
- 6.3.7.1 변경입찰은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전력거래입찰시스템을 우선 이용하여야 한다.
- 6.3.7.2 마감시간이후 입찰자료의 변경

발전회원은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 및 기술적특성을 변경하여 해당 거래시간 이전에 전력거래입찰시스템의 입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시스템의 고장등으로 이용 불가시에는 회원 대표자의 서명이 기입된 변경된 입찰자료(별지 제33호서식)를 모사전송 방법으로 전력거래소로 제출하고, 모사전송 방법도 이용불가시에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발전기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변경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7.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제2.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19.12.31., 2020.10.1., 2021.7.1.〉

- 6.3.7.4 전력거래소는 거래일 전일 11시까지 입찰한 자료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2.6.30.>
- 6.3.7.5 발전회원이 변경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6.3.7.5.1 발전기 특성변경

보일러, 터빈 또는 발전소 보조기기 고장 등의 사유로 발전기의 기술적인 특성(출력증가/감소율, 최대/최소 발전용량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6.3.7.5.2 발전기 시험 및 고장

발전기 시험, 발전기 설비 고장 등의 사정으로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개정 2013.4.30.>

가. 발전기 고장정지 시 공급능력 변경 기준[신설 2020.7.8.]

- 1) 발전회원은 고장정지발생 거래일·거래시간(분 단위)부터 고장 복구된 거래일·거래시간(분 단위)까지 고장정지 발생시간 직전 마지막 입찰 공급 가능용량 또는 고장복구시간 직전 발전기 정상상태를 가정한 마지막 사전 입찰 공급가능용량에서 매 거래시간별 정상운전기간(분 단위) 비율을 곱 하여 변경입찰 한다.
- 가) 변경된 공급가능용량= 고장정지 전 정상 입찰용량 × (정상운전기간 (분) ÷ 60분)
- 단, 발전소 자체설비 이상으로 거래소의 출력지시와 다르게 운전 중 고장 정지가 발생되어, 공급가능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거래시간은 계량값으로 변경 입찰한다.
- 2) 복합발전은 GT 1대분 공급가능용량, ST의 공급가능용량 및 GT 1대

당 고장정지 또는 고장복구 시 파급되는 ST공급가능용량을 매 거래시간 별 CC 입찰, GT 종합입찰 및 GT 입찰 운전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3) 이 경우, CC 입찰, GT 종합입찰은 개별 GT, ST의 정상운전기간(분단위)에 따라 변경하며, GT 1대 당 고장정지 또는 고장복구로 파급되는 ST 공급가능용량은 정상운전 가능한 GT 대수에 따라 균등하게 변동되는 것으로 본다.
- 가) GT 1대분 공급가능용량 = GT 종합입찰 : GT 정상운전 대수
- 나) ST 공급가능용량 = CC 입찰-GT 종합입찰
- 다) GT 1대 당 고장정지 또는 고장복구로 파급되는 ST 공급가능용량 = ST 공급가능용량 ÷ GT 정상운전 대수
- 6.3.7.5.3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 복합화력발전기에 한해,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으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 량이 변경되었을 경우[신설 2013.4.30.]
- 6.3.7.5.4 중앙급전구역전기발전기의 공급구역 내 수요변경 중앙급전구역전기발전기에 한해, 공급구역 내 수요 변경으로 발전기의 공 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설 2019.12.13.]
- 6.3.7.5.5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에 한해, 분산특구 내 수요 변경 등으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설 2025.7.10.]
- 6.3.7.6 입찰시스템운영담당자는 6.3.7에 의하여 변경된 입찰 자료를 제출받는 즉시 중앙전력관제센터의 계통운영담당자와 발전계획담당자에게 전력거래시스템의 근거리통신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2021.1.1.>
- 6.3.7.7 입찰시스템운영담당자는 6.3.7에 의하여 변경된 입찰자료 사본을 발전계획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다음 거래일에 입찰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6.3.7.6에 의해 전송받은 변경된 입찰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2021.1.1.>
- 6.3.8 전력부하감축(증대)입찰 [신설 2014.11.3.] <조문번호 변경 2019.1.2.> <개정 2021.1.1.>
- 6.3.8.1 입찰시 시간대별 감축(증대)가능용량(MWh)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수요반응 자원의 전력부하감축(증대)거래량 평가 방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송전손실계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 6.3.8.1.1 <삭제 2022.5.31.>
- 6.3.8.2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수요관리 사업자가 입찰하는 수요반응자원의 감축가격은 월별 수요반응자원 순편익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 2021.9.18.>

- 6.3.8.3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구간별 감축가능용량 및 감축가격이 증가하도록 입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1., 2021.9.18.>
- 6.3.8.4 수요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 이내 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운영담당자 및 입찰시스템운영담당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6.3.8.5 수요회원은 변경 입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3.>
- 6.3.8.6 수요관리사업자는 거래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을 수요반응자 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2.12.] <조문번호 변경 2019.1.2., 개정 2022.12.27.>
 - 1. 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개교기념일, 정기휴무일, 의무휴업일 등 법령, 조례 또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내부 규칙 등에 의하여 미리 특정되어 있는 휴무일
 - 2. 백화점의 휴점일, 공장의 하계휴가기간, 학교의 임시휴교일 등 실질적 인 노력 없이도 수요감축이 가능한 날
- 6.3.8.7 수요회원은 제12.4.2.2조 제6항에 따라 자동 제출된 입찰서의 경우 마감 시간과 관계없이 입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 6.3.9 전기저장장치 충전계획입찰 [신설 2016.5.12.]
- 6.3.9.1 전기저장장치의 충전계획 입찰에 관련한 사항은 6.3.3.1 내지 6.3.3.4의 양수계획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3.10 비상대기예비력 입찰 [신설 2020.12.1.]
- 6.3.10.1 입찰은 거래전일 거래시간 19시부터 거래 다음날 거래시간 4시까지 총34시간에 대하여 한다.
- 6.3.10.2 입찰은 거래전일 11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측할수 없는 발전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변경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휴일 예약입찰은 별표4 제1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2.6.30.>
- 6.3.10.3 입찰시 시간대별 비상대기예비력(MWh)은 송전단기준으로 제출하며, 발전기 계획정지 중 계획예방정비 및 계획중간정비정지와 비계획정지(불시정지 등), [별표4]7.11.6에 따른 고정출력 등으로 비상대기예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기예비력 입찰량을 "0"으로 한다. 해당거래시간 공급가능용량이 해당거래시간 1시간전후 공급가능용량과모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간은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할 수 없다. 단, 기후·환경제약에 따라 가동이 제한된 발전기가 연속하여 기후·

환경제약에 따라 가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간에 비상대기예비력을 입찰할 수 있다. <개정 2021.7.1.>

- 6.3.10.4 입찰시스템 구축전까지 공문, 전자우편 등으로 입찰하며, 시스템 구축시 이에 따른다. 발전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입찰 마감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운영 담당자 및 입찰시스템운영 담당자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6.3.10.5 비상대기예비력은 하루전발전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22.6.30.>
- 6.4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입찰 [신설 2023.8.30.]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본 항목의 규정을 따르며, 본 별표 내의 타 절차와 상충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항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6.4.1 입찰자료의 제출
- 6.4.1.1 입찰은 거래일 24시간에 대하여 한다.
- 6.4.1.2 하루전시장입찰자료는 하루전시장입찰마감시간 이전까지 전력거래입찰시 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원을 보유한 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는 별지 제31-6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 6.4.1.3 실시간시장입찰자료는 하루전시장입찰자료 및 실시간시장입찰마감시간 이 전까지의 변경입찰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입찰자료로 갈음한다. 다만, 해당 자원을 보유한 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3-6호를 작성하여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 6.4.1.4 실시간시장입찰마감시간이 지난 이후 예측 불가능한 발전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변경입찰을 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발생시점으로 부터 2시간 이내 에 변경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입찰서는 실시간에너지가 격 및 실시간예비력가격 결정을 위한 실시간발전계획의 입력자료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6.4.1.5 9.1.1 및 9.1.2에도 불구하고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하여는 공급가 능용량, 출력증가율, 출력감소율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입찰한다.
- 6.4.1.6 급전가능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동소요시간, 최소발전용량도달시간, 계통분리시간,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은 hh:mm의 형태로 분(min) 단위까지 입찰하여야 한다.

- 6.4.2 공급가능용량
- 6.4.2.1 입찰시 시간대별 공급가능용량은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은 송전단 기준 예측발전량(MWh)을 제출하되, 출력증가/감소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6.4.2.2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예측발전량 변경 등으로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6.3.7.5.2의 절차에 따라 변경입찰하여야 한다.
- 6.4.3 기술적특성
- 6.4.3.1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변경입찰 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16.3.2조의 하루전시장 입찰서에 기재한 기술적 특성 자료를 변경하여 입찰하여서는 아니된다.
- 6.4.3.2 6.4.3.1에도 불구하고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부분적인 고장으로 특성이 변경된 경우 사유를 명기하고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다.
- 6.4.4 입찰가격
- 6.4.4.1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입찰가격은 6.4.2.1에서 제출한 시간대별 예측 발전량(MWh)에 대하여 최대 10개 구간까지 자유롭게 나누어 가격을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입찰하되, 하한은 제 16.3.2조의 입찰하한가격, 상한은 제16.3.2조의 입찰상한가격으로 한다.
- 6.4.4.2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16.1.8조 제4호의 하루전 시장 입찰마감시간 이후 발전기의 입찰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 거래입찰시스템을 통해 6.4.4.1에 따라 제출한 구간별 입찰가격보다 전체 발전구간에 대해서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 6.5 1MW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입찰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MW초과 비중앙 급전발전기에 대해서는 본 항목의 규정을 따르며, 본 별표 내의 타 절차 와 상충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6.5.1.1 입찰은 거래일 24시간에 대하여 한다.
- 6.5.1.2 하루전시장입찰자료는 하루전시장입찰마감시간 이전까지 전력거래입찰시 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원을 보유한 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는 별지 제31-7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 6.5.1.3 실시간시장입찰자료는 하루전시장입찰자료 및 실시간시장입찰마감시간 이전까지의 변경입찰자료 중 가장 최신의 입찰자료로 갈음한다. 다만, 해당자원을 보유한 회원의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3-7호를 작성하여 모사전송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 6.5.1.4 9.1.1 및 9.1.2에도 불구하고 1MW초과 비중앙급전자원발전기에 대하여

는 공급가능용량을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입찰하다.

- 6.5.2 공급가능용량
- 6.5.2.1 입찰시 시간대별 공급가능용량은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은 송전단 기준 예측발전량(MWh)을 제출하여야 한다.
- 6.5.2.2 1MW초과 비중앙발전기에 대한 예측발전량 변경 등으로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6.3.7.5.2의 절차에 따라 변경입찰하여야 한다.
- 7.0 입찰서의 내용(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및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 제 외) <개정 2019.1.2., 2025.7.10.>
- 7.1 입찰서가 유효한 거래일 날짜 <개정 2014.11.3.> 발전 및 전력부하감축(증대)에 대한 계획수립기간중 전력시장에서 전력이 거래되는 거래시간이 01시에서 시작하여 거래시간 24시에 종료하는 기간 의 1일을 말한다. <개정 2021.1.1., 2021.12.28.>
- 7.2 발전회사 전력거래로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7.2.1 수요관리사업자 수요반응자원을 통한 전력거래를 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회사 를 말하다.
- 7.3 발전기명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발전기명을 말한다.
- 7.3.1 수요반응자원명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수요반응자원명을 말한다.
- 7.4 식별번호본 별표 5.7조 참조
- 7.5 기동 소요시간(단위: hh:mm)
 발전기가 급전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발전상태별(열간/온간/냉간) 운전실적에 기준하여 입찰한다. <개정 2020.10.1.>
- 7.6 최대 발전용량(단위: MW) <개정 2002.9.11.>
- 7.6.1 복합화력발전기의 경우 분기별 대표온도로 해당자료를 제출한다.<개정 2011.6.30.>
- 7.6.2 복합화력발전기의 분기별 대표온도 설정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1.6.30>

구분	1/4	2/4	3/4	4/4
적 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표온도	-20℃	0℃	10℃	-20℃

- 7.6.3 최대감축용량(단위: MW) [신설 2014.11.3.] <개정 2021.9.18.> 수요반응자원의 최대 감축용량은 입찰서의 마지막 구간의 감축가능용량으로 처리한다. 단, 하나의 구간으로만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첫 구간의 감축가능용량을 최대감축용량으로 한다.
- 7.7 최소 발전용량(단위: MW)
 2대 이상의 가스터빈발전기를 포함한 복합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1:1
 운전조합의 최소발전용량을 제출한다. 단,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최소발
 전용량이 2:1운전조합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운전조합의 최소발전
 용량과 최소출력 기준 GT대수를 제출 한다. <개정 2020.10.1.>
- 7.7.1 최소감축용량(단위 : MW) [신설 2014.11.3.] <개정 2019.12.31., 2021.9.18.>수요반응자원의 최소감축용량은 입찰서의 첫 구간의 감축가능용량으로 처리한다.
- 7.8 최소 정지시간(단위: hh:mm) 발전기가 계통분리 이후 연결될 수 있기까지의 최소시간 간격으로서, 이 시간 내에는 계통에 연결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7.8.1 최소 감축지속시간(단위: Hr)[신설 2014.11.3.] <개정 2019.12.31.> 수요반응자원이 전력부하감축을 시작하여 중지할 수 있기까지의 최소시간 간격으로서, 이 시간 내에는 전력부하감축을 중지 할 수 없는 것을 말한 다. 단, 제12.4.2.2조 제1항 제2호 기준수요 초과 및 제3호 미세먼지 저 감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7.9 공급가능용량(단위: MWh)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이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출력증가/감소율을 고려한 공급가능한 용량을 말한다.
- 7.9.1 수력 및 양수발전기의 발전입찰의 경우 공급가능용량(Ait)에 운전가능한 시간대별 최대용량을, 연료량(OFCAit)에 시간대별 발전계획량(EGWi,t)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6.]
- 7.9.2 감축(증대)가능용량(단위: MWh)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회원이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전력부하를 감 축(증대)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개정 2021.1.1.>
- 7.10 연료량(단위: MWh) 발전기가 거래시간별로 사용가능한 연료량을 발전량으로 환산하여 입력하 여야 하며, 연료량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6.12.26.1

- 7.11 제약운전 <조문번호이동 2006.12.26.>
- 7.11.1 제약운전은 발전기가 기술적 제약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출력을 제한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제약유형에 따라 하한제약, 상한제약, 고정출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2.26., 2017.5.30.>
- 7.11.2 제약운전으로 운전시 제약유형별로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제약사유와 제약운전으로 공급가능한 용량을 기재한다. <개정 2006.12.26., 2017.5.30., 2021.1.1.>
- 7.11.2 제약운전으로 운전시 제약유형별로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제약사유와 제약운전으로 공급가능한 용량을 기재한다.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는 제약운전 시제약운전으로 공급가능한 용량에 해당하는 개별 발전기의 운전조합을 제약운전정보에 추가 기재한다.<개정 2006.12.26., 2017.5.30., 2021.1.1.> [시행일: 2026.1.1.부터 시행예정]
- 7.11.3 제약운전으로 입찰한 용량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6.]
- 7.11.4 하한제약은 7.10의 연료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6.]
- 7.11.5 고정출력 및 상한제약은 연료량, 제약량, 공급가능용량과 동일해야 한다. 이때, 고정출력으로 입찰한 발전기의 발전량이 공급가능용량보다 허용오차를 초과해 작을 경우, 변경입찰을 통해 공급가능용량을 발전량으로 조정해야 한다. 단, 비상대기예비력으로 입찰한 상한제약의 경우 석탄발전기에 한하여 상한제약을 초과하여 속도조정률 특성에 따른 0.2Hz 변동시응답가능한 주파수 추종 이론값 범위까지 연료량 및 공급가능용량을 입찰할 수 있으나, 적용상한 범위는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파수추종최대 운전범위로 한다. [신설 2006.12.26.] <개정 2017.5.30., 2020.7.8., 2021.12.28.>
- 7.11.6 제약코드는 제약운전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서, 제약유형과 제약사유를 나타내는 번호를 조합하여 2 내지 3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2009.12.31., 2014.11.3., 2017.5.30., 2024.3.28.>
 - · 첫째자리 : 1 하한제약, 2 고정출력,3 상한제약
 - ·둘째·셋째자리: 0 제약해제, 1 열공급, 2 연료의무사용, 3 시운전, 4 성능시험, 5 자체시험, 6 기타, 7 <삭제 2021.1.1>, 8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계통분리시 석탄저장조 잔여탄 소진, 9 대기오염물질 저감, 10 열공급중 AGC, 11 페어발전기 제약, 12 기동횟수제한, 13 석탄발전단지 필수운전제약, 14 원전 안전운영 관련 제약
- 7.12 자체기동서비스 가능여부 [신설 2014.11.3.]

- 7.12.1 자체기동발전기는 매 시간 자체기동서비스 가능여부를 자체기동서비스 플래그에 입찰한다.
- 7.12.2 자체기동서비스 플래그는 1자리 숫자로 다음과 같다. · 1: 가능, 0: 불가능
- 7.13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단위: hh:mm)[신설 2020.10.1.]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부터 최소발전용량까지 도달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말하며 발전상태별(열간/온간/냉간)로입찰한다.
- 7.14 일일최대기동횟수(단위: 회) [신설 2020.10.1.] 거래일 발전기가 최대 기동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이 항목은 발전기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일일 최대 기동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한다.
- 7.15 발전기 상태 천이시간(단위: hh:mm)[신설 2020.10.1.] 발전기가 정지시점을 기준으로 온간 또는 냉간 상태로 변경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 7.16 최소운전시간(단위: hh:mm)[신설 2020.10.1.] 발전기가 계통연결 이후 계통분리 될 수 있기까지의 최소 시간간격으로 발전기 운영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한 운전되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서 운전시간은 발전기 차단기가 닫힌 시점부터 열린 시점까지를 말한다.
- 7.17 계통분리시간(단위: hh:mm)[신설 2020.10.1.]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으로부터 전력계통에서 분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 7.18 출력 증·감발율(단위 : MW/min)[신설 2020.10.1.] 발전기가 분당 출력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7.19 최소출력 기준 GT 대수(단위: 대)[신설 2020.10.1.] 복합발전기가 안정하게 최소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GT 운전대수를 말한다.
- 7.20 발전단전환비(단위: 없음) [신설 2020.10.1.] <개정 2021.1.1.> 발전계획에 적용할 발전단전력을 계산하기 위해 송전단 전력에 곱하는 전 환비를 말한다.
- 7.20.1 소내소비전력 및 변압기손실을 고려하여 매 시간 발전단전환비를 입찰해 야 한다.
- 7.21 호기별 운전정보(단위: 없음) [신설 2020.10.1.] 복합, 수력, 양수와 같이 여러 대로 구성된 발전기의 각 호기별 운전정보 를 말하며 복합발전기는 가스터빈 운전정보를 입찰한다.
- 7.21.1 호기별 운전정보는 각 호기별로 운전이 가능하면 1, 운전이 불가하면 0으

- 로 입력하다.
- 7.22 GT 단독운전 가능여부(단위 : O/X) [신설 2020.10.1.] 거래일 복합발전기가 CC모드 운전 외에 GT 모드 운전가능여부를 말한 다.
- 7.23 대체연료 가능여부(단위 : O/X) [신설 2020.10.1.] 거래시간 대체연료 사용 가능여부를 말한다.
- 7.24 GF 여부(단위 : O/X) [신설 2020.10.1.] 거래시간 발전기의 GF 운전여부를 말한다.
- 7.25 AGC 여부(단위 : O/X)[신설 2020.10.1.] 거래시간 발전기의 AGC 운전여부를 말한다.
- 7.26 GF 상/하한(단위: MW)[신설 2020.10.1.] <개정 2021.7.1.> 거래시간 발전기의 GF 운전 상/하한 범위를 말하며 자세한 것은 '계통평 가세부운영규정'을 따른다.
- 7.27 AGC 상/하한(단위: MW)[신설 2020.10.1.] <개정 2021.7.1.> 거래시간 발전기의 AGC 운전 상/하한 범위를 말하며 자세한 것은 '계통 평가세부운영규정'을 따른다.
- 7.28 GT 기동우선순위(단위: 없음)[신설 2020.10.1.]
 복합발전기 가스터빈 중 우선적으로 기동돼야 할 순위를 말한다.(ex. 312
 → 3호기, 1호기 2호기 순으로 기동을 우선)
- 7.29 GT 단독운전 가능시간(단위: hh:mm)[신설 2020.10.1.] 거래일 복합발전기의 가스터빈이 단독으로 안정운전이 가능한 최대시간을 말한다.
- 7.30 GT 입찰대비 단독운전가능 용량비(단위: %)[신설 2020.10.1.] 거래일 복합발전기의 가스터빈 단독운전 시 대표GT 입찰의 공급가능용량 대비 단독운전 가능한 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7.31 비상대기예비력 [신설 2020.1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가동중단, 상한제약(이하 '기후·환경 제약')에 의해 가동이 제한된 석탄발전기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전력 거래소가 급전지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거래시간별로 별도로 입찰한 용량 (MWh)을 말한다.
- 8.0 입찰서의 내용(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및 중앙급전분산특구발전기) [신설 2019.1.2.] <개정 2025.7.10.>
- 8.1 입찰서가 유효한 거래일 날짜 발전에 대한 계획수립기간 중 전력시장에서 전력이 거래되는 거래시간이

- 01시에서 시작하여 거래시간 24시에 종료하는 기간의 1일을 말한다. <개 정 2021.12.28.>
- 8.2 구역전기사업자명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명 <개정 2025.7.10.>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 8.3 발전기명 <개정 2025.7.10.>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명 및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명을 말한다.
- 8.4 식별번호본 별표 5.7조 참조
- 8.5 시간대별 발전가능용량(단위: MWh) <개정 2025.7.10.>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및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의 발전량 계량점 (주변압기 2차측) 기준 시간대별 발전가능용량을 말한다.
- 8.6 시간대별 공급구역 예상 전력수요(단위: MWh)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의 송전단을 기준으로한 공급구역의 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를 말한다.
- 8.7 시간대별 분산특구 예상 전력수요(단위: MWh) [신설 2025.7.10.]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1시간 단위의 예상 전력량을 말한다.
- 8.8 시간대별 예상 발전량(단위: MWh) [신설 2025.7.10.] 중앙급전 분산특구발전기의 발전량 계량점(주변압기 2차측) 기준 시간대 별 예상 발전량을 말한다.
- 8.9 공급소요시간(단위: Hr) <번호변경 2025.7.10.> 급전지시 이후 구역수요 및 분산특구 수요 초과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계통 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 9.0 입찰시 유의사항 <조문번호 변경 2019.1.2.>
- 9.1 입력 자리수
- 9.1.1 공급가능용량, 재선언공급가능용량, 제약운전 공급가능용량, 최대발전용 량, 최소발전용량, GF 상/하한, AGC 상/하한, 일일최대기동횟수, 최소출력 기준 GT 대수, GT 호기별 운전정보, GT 기동우선순위, GT 입찰 대비 단독운전가능 용량비, 양수 예상수요,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서 최소감축용량, 감축가능용량은 정수(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입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19.12.31., 2020.10.1., 2021.1.1., 2021.9.18.>
- 9.1.2 출력증가율, 출력감소율,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 서 최대감축용량은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입찰하여야 한다. <개정

- 2019.12.31., 2021.9.18.>
- 9.1.3 기동소요시간, 최소발전용량도달시간, 천이시간,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계통분리시간, GT 단독운전 가능시간은 hh:mm의 형태로 분(min)단위까지 입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
- 9.1.4 발전단전환비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입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
- 9.1.5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에서 증대가능용량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입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
- 9.2 입찰의 무효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이 된 경우에는 입찰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 9.3 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절차 발전기에 대한 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에 대한 입찰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한다.
- 9.3.1 발전기의 발전가능용량은 가장 최근에 제출한 전일의 유효한 입찰자료의 같은 시간대 값을 적용한다.<개정 2012.12.31.>
- 9.3.2 입찰시스템운영담당자는 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발전기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제출한 전일의 유효한 입찰자료의 같은 시간대의 입찰값을 거래일 입찰자료 전송시에 발전계획담당자 또는 발전계획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1.>
- 9.3.3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7.1.>
- 9.4 동일한 발전기 및 동일한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입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된 입찰서중 마감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출된 입찰서가 발전계획 수립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입찰운영담당자나 발전계획시스템에 전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3., 2021.1.1.>
- 9.5 동일한 시간에 제출된 입찰서가 모사전송 방식에 의해 접수된 입찰내용과 입찰 홈페이지에 입력된 입찰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 홈페이지에 의 해 입력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9.6 열공급제약, 연료제약으로 입찰한 발전기는 전력거래소가 요구시 요구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약운전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제약운전은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약운전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전력거래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 9.7 입찰자료의 검토
- 9.7.1 전력거래소 입찰운영담당자는 발전회원 입찰 자료에 대해 9.7.3부터

- 9.7.8까지 항목을 검토한다. 다만, 9.7.6.1 및 9.7.8은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장 운영 담당자가 검토하고, 마감시간 이후 입찰변경에 대한 검토는 계통운영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0.7.8., 2020.10.1., 2021.1.1.>
- 9.7.2 입찰운영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입찰자료를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자료를 변경한다. <개정 2020.10.1.>
- 9.7.3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의 적정성 검토
- 9.7.3.1 계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와 입찰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 <개정 2019.12.31., 2021.7.1.>
- 9.7.3.2 검토 대상 자료 <개정 2020.10.1.>
 기동소요시간, 최소발전용량도달시간, 일일최대기동횟수, 천이시간, 최소 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계통분리시간, 출력증가율, 출력감소율, 최소출력 기준 GT 대수,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GT 단독운전 가능여부 <개 정 2022.11.30.>
- 9.7.4 공급가능용량 적정성 검토
- 9.7.4.1 공급가능용량이 발전기정비관리시스템에서 승인된 예방정비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신설 2019.12.31.]
- 9.7.4.2 공급가능용량이 최대발전용량과 최소발전용량 범위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능용량이 최대발전용량을 초과하였을 때 공급가능용량은 최대발전용량으로 수정한다. <개정 2019.12.31.>
- 9.7.4.3 출력증가/감소율을 위반하지 않았나를 공급가능용량에서 해당시간 1시간 이전 공급가능용량을 뺀 값의 절대값이 증(감)발율에 60을 곱한 값보다 큰지의 여부로 확인한다. [신설 2019.12.31.]
- 9.7.5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 변경시 사유서 제출확인
- 9.7.6 미자격 발전기의 입찰참여 확인 계획예방정지, 고장정지 등 발전회원의 사유로 정지중인 발전기가 입찰에 참여하였는가 확인
- 9.7.6.1 미자격 수요반응자원의 입찰참여 확인 [신설 2014.11.3.] 규칙 제12.4.2.6조 및 제12.4.3.2조 규정에 따라 입찰이 제한된수요반응 자원이 입찰에 참여하였는가 확인
- 9.7.6.2 고장정지 발전기 공급가능용량 변경 확인 [신설 2020.7.8.] 별표11. 실시간급전운영 절차 7.1.6에 따라 계통운영담당자는 고장정지발 전기 호기와 고장정지발생 및 정상화 일시를 분 단위까지 전력거래시스템에 입력하면, 6.3.7.5.2 가.의 발전기 고장정지 시 변경입찰 기준에 따른 변경입찰 기준값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를 계통운영담당자가 확인한 고장정지 시 공급가능용량으로 간주한다.

- 9.7.7 입찰자료가 RSC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나 확인
- 9.7.7.1 bidayyyymmdd.dat(가용능력 파일명), bidgyyyymmdd.dat(매개변수 파일명), bidryyyymmdd.dat (재가용능력 파일명)가 RSC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나 확인한다.
- 9.7.7.2 상기 파일 중 bidayyyymmdd.dat(가용능력 파일명), bidgyyyymmdd.dat (매개변수 파일명) 파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파일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시스템운영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9.7.8 수요반응자원 입찰자료의 적정성 검토 [신설 2014.11.3.]
- 9.7.8.1 수요관리사업자가 입찰한 감축가격이 전력거래소에서 공개한 월별 수요반 응자원 순편익가격이상인지 여부
- 9.7.8.2 입찰구간에 따라 감축가능용량과 감축가격이 증가하는지 여부
- 9.7.8.3 거래시간별 감축(증대)가능용량과 최소 감축지속시간의 적정성 여부 <개 정 2021.1.1.>
- 10.0 **입찰 공급가능용량과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허위신고** <조문번호 변경 2019.1.2.>
- 10.1 발전회원은 공급가능용량이나 기술적 특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하여서 는 아니된다.
- 10.2 발전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입찰일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료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1.7.1.>
- 11.0 입찰자료의 보존, 활용, 폐기 〈조문번호 변경 2019.1.2.〉
- 11.1 기록관리 전력거래소는 본 별표 6.0의 규정에 의하여 각 발전회원과 수요회원이 입 찰한 내용 및 시각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 11.2 입찰시스템의 운영 및 점검 입찰시스템의 운영 및 점검은 입찰시스템 운영메뉴얼에 따른다.
- 11.3 전력거래소는 회원들의 입찰자료를 10년 동안 보존, 활용 후 폐기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정세의 변화로 보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11.4 시스템관리부서는 입찰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멸실,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12.0 부칙 <조문번호 변경 2019.1.2.>
- 12.1 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칙을 승인하여 전력거래 입찰이 실시되는

- 날의 0시부터 적용한다.
- 12.2 휴일 예약입찰
- 12.2.1 6.3.1.1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 입찰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거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예약입찰을 시행한다. <개정 2017.12.29.>
- 12.2.1.1 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거래일 이전 최종근무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거래일과 거래일 다음날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 12.2.1.2 휴일이 2일인 경우에는 거래일 이전 최종근무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거래일과 거래일 다음날 2일분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 12.2.1.3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시작 2일전 최종근무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휴일시작 1일전 거래일과 휴일 2일분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휴일시작 1일전에 전일에 입찰한 휴일날을 제외한 나머지휴일분과 마지막 휴일 다음날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전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예약입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1.>
- 12.2.1.4 양수발전기의 양수계획 변경입찰은 6.3.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일이 1일 추가될 때마다 변경입찰시간을 16시까지에서 1시간씩 연장 할 수 있다.
- 12.2.1.5 12.2.1.1 및 12.2.1.2, 12.2.1.3에서 결정된 예약입찰 일정은 당해 연도 개시 전까지 회원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 12.2.2 12.2.1의 규정에 의한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말한다. <개정 2004.7.9., 2024.8.1.>
- 12.3 마감시간이후 변경입찰 유예 <삭제 2005.10.10>